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기상에 따른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기상에 특화된 예보분석 및 대내외 소통을 전담하기 위하여 기상청 예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예보총괄관리관과 재해기상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고위나 1명, 4급 1명) 중 1명(고위나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기상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디지털 중심 홍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며,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치예보센터'로 기관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관측 표준화, 품질관리 정책, 법령 개정 및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계측표준협력과에서 관측정책과로,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유지, 기상관측망 구축·운영, 관측지원선박에 관한 사무를 관측정책과에서 계측표준협력과로 상호 이관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2025. 2. 7. 시행)에 따른 기상전문기관 관리에 관한 기능을 계측표준협력과에 신설하며, 계측표준협력과를 관측표준기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상서비스정책과 사무에 항공기상 업무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수치예보센터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하위 부서인 수치모델개발과를 수치예보기획과로, 수치자료응용과를 수치예보기술과로 각각 변경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재해기상대응팀과 영향예보지원팀을 폐지하고, 뉴미디어 기반의 정책 소통 제고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의 존속 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기관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평가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보총괄관리관으로 하며, 예보총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보총괄관리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22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예보국에 예보정책과·예보기술과·국가태풍센터·재해기상대응과·총괄예보관 4명을 두며, 예보정책과장·예보기술과장·국가태풍센터장·재해기상대응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5항(종전의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제6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5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3호의2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개선 및 운영

12.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지원 및 자료의 수집·관리

제6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기상대응팀장”을 “재해기상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삭제한다.

10. 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운영

11.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12.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유해화학물질·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3. 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내외 협력

제7조제2항 중 “관측정책과·계측표준협력과·정보통신기술과·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를 “관측정책과·관측표준기술과·정보통신기술과·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1.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3.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4.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측표준협력과장”을 “관측표준기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책의 수립·조정 및 운영”을 “정책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정·협의·등급부여”를 “등급부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유지에 관한 사항

15. 청 내 기상관측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16. 관측지원선박에 관한 사항

17. 기상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항공기상업무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치모델링센터장”을 “수치예보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수치모델개발과·수치자료응용”을 “수치예보기획과·수치예보기술”로, “수치모델개발과장”을 “수치예보기획과장”으로, “수치자료응용과장”을 “수치예보기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치모델개발과장”을 “수치예보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의5 중 “수치모델”을 “수치예보모델”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치자료응용과장”을 “수치예보기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료동화기법”을 “수치예보모델 자료동화기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품질검사 및 관리”를 “품질검사·진단·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6호) 중 “관측자료의 통합과정”을 “수치예보모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개선에 관한 연구”를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해양기상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
12.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13. 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14. 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제10조제5항제1호의2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호의2) 중 “해양기상예측모델의”를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수치예보모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8. 수치예보가이드스 개발 및 관리

제11조제6항제6호 중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지진장비”를 “포함한다)·예보·지진장비”로, “유지·관리”를 “전산·통신장비의 운영·유지·관리”로 한다.

제12조제3항제7호 중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지진장비”를 “포

함한다)·예보·지진장비”로, “유지·관리”를 “전산·통신장비의 운영·유지·관리”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정원”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를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로 한다.

1. 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과, 총괄예보관

제8장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평가대상 정원)”을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상청”을 “기상청과 그”로, “평가대상”을 “평가대상 조직 및”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치모델링센터”를 “수치예보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전주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431”을 “434”로, 일반직 계 “430”을 “433”으로,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5”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7”을 “118”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37”을 “440”으로, 일반직 계 “436”을 “439”로,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5”로, 행정주사·공업주사·기상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3”을 “124”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원 정원표 (제17조제1항 관련)”을 “수치예보센터 공무원 정원표 (제1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환경부령 제102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6년 3월 31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한다.

환경부령 제104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3월 31일”을 “2028년 3월 31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부 칙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9조 관련)

1. 기상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예보총괄관리관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 예보총괄관리관 재해기상대응과	0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2. 기상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가.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업무(수도권 기상청 · 대구지방기상청)	8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업무(대전지방 기상청 · 제주지방기상청 · 전주기상지청 · 청주기상지청)	12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1. 제20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기상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기상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2. 제20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기상연구관	1

3. 제2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기상연구관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기관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평가
제6조(예보국) ① (생략)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제6조(예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

예보정책과·예보기술과·국가태풍센터·재해기상대응팀 및 영향예보지원팀을 두며, 총괄예보관·예보정책과장·예보기술과장 및 국가태풍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해기상대응팀장 및 영향예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신 설>

<신 설>

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보총괄관리관으로 하며, 예보총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보총괄관리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22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예보국에 예보정책과·예보기술과·국가태풍센터·재해기상대응과·총괄예보관 4명을 두며, 예보정책과장·예보기술과장·국가태풍센터장·재해기상대응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 13. (생 략) 14.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유해화학물질·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4의2. 15. (생 략) ④ (생 략) ⑨ 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11. (생 략) <신 설> ⑩ (생 략)	다. ⑤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u>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4의2. 15. (현행과 같음) ⑬ (현행 제4항과 같음) ⑨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개선 및 운영</u> 4. ~ 11. (현행과 같음) 12. <u>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지원 및 자료의 수집·관리</u> ⑩ (현행과 같음)	⑪ 재해기상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⑫ 영향예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종합·조정</u> 2. <u>분야별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제공</u> 3. <u>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개선 및 운영</u> 4. <u>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지원</u> 5. <u>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자료의 수집·관리</u> 6. <u>확률기반 위험기상전망 기술</u>	⑪ 재해기상대응과장----- -----. 1. ~ 9. (현행과 같음) 10. <u>재난 및 위기대응에 관한 기상업무 운영</u> 11. <u>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u> 12. <u>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유해화학물질·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u> 13. <u>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내외 협력</u> <삭 제>
--	---	---	--

3.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삭 제>
4.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삭 제>
5. ~ 6의4. (생 략)	5. ~ 6의4. (현행과 같음)
6의5.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6의5. 수치예보모델 -----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치예보기술과장----- -----.
1. 관측자료통합·자료동화·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삭 제>
2.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및 개선	2. 수치예보모델 자료동화기법----- --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 품질검사 및 관리	3. ----- -- 품질검사·진단·영향평가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개선	<삭 제>
5. 동네예보모델의 개발·운영 및 관리	<삭 제>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	10. 수치예보모델의 ----- --
<신 설>	11. 해양기상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

<신 설>	12.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신 설>	13. 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삭 제>
8. 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8. ----- ----- 개선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⑤ 수치예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해양기상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	7.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 --
2.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삭 제>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삭 제>
4.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4. 수치예보모델 ----- -----
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삭 제>
<신 설>	6.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u><신 설></u>	<u>8. 수치예보가이던스 개발 및 관리</u>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⑤ (생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삭제	6. -----
6.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지진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6. ----- 포함한다)·예보·지진장비----- ----- 전산·통신장비의 운영·유지·관리
6의2. ~ 10. (생략)	6의2. ~ 10.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② (생략)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예보·전산·통신·지진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7. ----- 포함한다)·예보·지진장비----- ----- 전산·통신장비의 운영·유지·관리
7의2. ~ 11. (생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예보센터-----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④ -----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37</u>	• <u>440</u>	+3
•	•	•	
•	•	•	
일반직 계	<u>436</u>	<u>439</u>	+3
고위공무원단	<u>7</u>	<u>8</u>	+1
•	•	•	
•	•	•	
서 기 관 · 과 학 기 술 서 기 관 또는 수석전문관	<u>4</u>	<u>5</u>	+1
•	•	•	
•	•	•	
행 정 주 사 · 공 업 주 사 · 기 상 주 사 · 시 설 주 사 · 전 산 주 사 또는 방 송 통 신 주 사	<u>123</u>	<u>124</u>	+1
•	•	•	
•	•	•	